

부천시 여성회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11월 15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6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(2010년 12월 14일) 상정 원안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가족여성과장 손영숙)

□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·규칙의 규제개선을 협조함에 따라 교육수강 중단 등의 사유에 따른 환불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는 한편,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「모·부자복지법」을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으로 정비함(안 제9조제4호).
- 나. 교육수강 중단 등의 사유에 따른 환불규정을 개선함.(안 제10조)

1) 취소 월의 수강료를 전액 공제하고 잔여 월분만 반환

- 일반학원 반환규정과 같이 기 수강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 수강료와 남은 월분을 합산하여 반환

다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(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, 제9조부터 제12조까지,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)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교육수강료 반환 기준이 바뀐 시점은?	○ 2009년 6월에 기준이 바뀌었음.
○ 다른 부서에서는 1년전부터 기준을 개정하였는데 그동안 개정하지 않는 이유는?	○ 죄송하게 생각함.
○ 관련 지침이나 기준이 바뀌면 신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행정의무를 다해야 할 것임.	○ 잘 알겠음. (이상 가족여성과장)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 여성회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여성회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09:00~18:00”을 “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”로 한다.

제6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8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·제2호·제3호 및 제5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세대

제10조제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월분”을 “해당 월의 수강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 수강료와 남은 월분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5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”을 “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